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대행근거 마련,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조건 규정,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 등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검역 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제9조의3, 제23조 등 변경)
- 나.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방법 확대(안 제7조의2 변경)
- 다.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세부
기준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라. 계약사육농가 대상 방역교육 내용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 세부 기준 명확화(안 제9조의3 변경)
- 마. 교육 시간·횟수 등 역학조사관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16조의2제5항, 별표 1의9 변경)

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가축 입식 사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사.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안 42조제1항, 별표 14의2 변경)

자.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기준 및 방법 명확화(안 별표 1의4 변경)

차.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보완(안 별표 1의6 변경)

카.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의7 변경)

타. 사료제조업체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1의10 변경)

파.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및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서식 보완
(안 별지 1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이수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11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역본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재해나 질병,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 :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교육, 방역관리 및 이행여부 점검, 위반 사항 개선 절차 등
 2. 운송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관리방안, 가축운송차량 분뇨유출방지방안, 시설출입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작동을 위한 관리방안 등
 3. 도축 :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출입통제·소독 등 방역관리방안 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로 정하는 차단방역관리 방안 등을 말한다
-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면서 출입 또는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중전의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축산

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개선조치 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9조의3(중전의 제9조의2)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를 “통보(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2. 차단방역,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제16조의2제5항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시간, 내용 및 횟수 등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계약사육농가인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 본문”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종별 특성, 치사율, 발생농장의 위치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앙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살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을 각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0조제3항”을 각각 “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종란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
다)

라.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

별표 1의4를 별지과 같이 한다.

별표 1의6의 보수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소양”을 “소양, 축산농가 방역
과 위생업무 절차”로 한다.

별표 1의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기준

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수량	비고
----	----	----

부 검 실	1실	
소각실 또는 소각로	1실 또는 1로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인체 동정(병리해부·조직 등)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험실을 무균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별도 구분·구획된 검사시료(폐사체·장기 등) 전처리실이 있을 경우, ‘부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각실 또는 소각로를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

별표 1의7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부터 다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원인체 동정(병리해부·조직 등)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 필요한 가목의 필수
기자재, 다목의 실험실 물품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10 제2호바목 방역시설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료에 모기, 파리 등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
충망 등을 해당 시설에 설치할 것. 다만, 사료제조시설 구
조 등 여건상 방충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충등(捕
蟲燈)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
로 방충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2호 8.기타의 시설기준란 중 “요건조건에 준한”을 “그 요

구조건에 준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3. 계류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1) 중 “수입상자”를 “수출·수입상자”로 하며, 같은 호에 8. 기타의 시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조건에 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에 관련분야, 관련축종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
고, 첨부서류란의 “명세서”를 명세서, 운영계획서“로 한다.

관련분야	[] 축산시설·차량 청소·소독, [] 해충방제·구서, [] 닭진드기 방제(산란계·종계), [] 거점소독시설, [] 기타()
관련축종	[] 소, [] 돼지, [] 육계, [] 산란계, [] 종계, [] 육용오리, [] 종오리, [] 메추리, []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을 각각 “「가
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1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0조제2
항제4호”로, 같은 서식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별표 1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4]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1. 소독·방제 공통 기준

가. 소독·방제 전 개인보호구(방역복, 보안경, 방진마스크, 장갑,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 참여자 및 업무에 사용할 장비를 소독해야 한다.

나. 소독·방제 등에 사용하는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검역본부장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곤충·쥐 등 질병 매개체의 특성과 각 소독·방제 시설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라. 소독·방제에 사용한 약품, 용량, 소독·방제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소독·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2. 방제 방법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처리나 열풍 등의 방제법을 사용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살충제 또는 기피제를 사용해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 2) 친환경인증농가는 유기합성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천적을 이용한다.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라. 물리적·환경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 중 해당 시설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고압세척·물세척 등의 방법으로 축사의 먼지와 유기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마. 다음의 방법에 따라 쥐의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 1) 음식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 3)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쥐막기처리(방서처리)를 해야 한다.
- 4) 쥐제거제(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3. 소독 방법

- 1) 농장 등 시설의 소독 시 오염구역, 준청결구역, 청결구역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2) 별표 2에 규정된 소독종류별 소독실시 방법과 소독대상별 소독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4. 그 밖에 소독·방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전신고	7일
------	-----	------	------	----

신고인	소유자·관리자명		농장명
	농장주소		전화번호
	인·허가(고유)번호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m²	사육형태 축사[], 방목[], 축사 및 방목 혼합[]	

[illegible]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50 151 152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출인 (제출 대행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출을 대신할 경우 위임장,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현황		설치여부		설치 대수	정상작동	
		여	부		여	부
소독 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 소독 장치					
	- 차량의 각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		[]	[]
	- 차량의 각 출입구에 고압분무기 설치	[]	[]		[]	[]
	(2)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 닭·오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신발소독조	[]	[]		[]	[]
	- 사료창고·집란실에 신발소독조	[]	[]		[]	[]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3) 농장의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		[]	[]
	(4) 전실(前室)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		[]	[]	
-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구분	[]	[]		[]	[]	
-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	[]	[]		[]	[]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	[]	[]		[]	[]
	(2)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	[]		[]	[]
	(3) 울타리 또는 담장	[]	[]		[]	[]
	※ 울타리 또는 담장이 전부 또는 일부없는 부분의 자연경계 유무	[]	[]		[]	[]
	(4) 방역실	[]	[]		[]	[]
	(5) 물품반입창고	[]	[]		[]	[]
	(6)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및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의 차단망	[]	[]		[]	[]
(7)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에 CCTV	[]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m²)]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가축의 소유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신발·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다만, <u>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 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이수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들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② (생략) ③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 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방역본부

역본부”라 한다)

2. (생 략)

④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재해나 질병,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 :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교육, 방역관리 및 이행여부 점검, 위반사항 개선 절차 등

2. 운송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방안, 가축운송차량 분뇨유출방지방안, 시설출입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작동을 위한 관리방안 등

3. 도축 :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출입통

제·소독 등 방역관리방안 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로 정하는 차단방역관리 방안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면서 출입 또는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 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생략)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 운영 방법

3. ~ 6. (생략)

③ (생략)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생략)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방역기준·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개선조치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차단방역,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통보(전자
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
다)---

제9조의4 (현행 제9조의3과 같음)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
9호서식에 따른다.

⑤ -----
----- 교육·훈련 시
간, 내용 및 횟수 등 교육·훈련-
-----.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계약사육농가인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
0조제1항 및 제2항 -----

--. 다만, 축종별 특성, 치사율, 발생농장의 위치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앙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살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u><신 설></u>	<u>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u>
<u><신 설></u>	<u>나. 초생추·종란 검역시행장</u>
<u><신 설></u>	<u>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u> <u>(연구기관·대학·기업체</u> <u>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u> <u>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u> <u>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u> <u>다)</u>
<u><신 설></u>	<u>라.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u> <u>장</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